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01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 박수현·서삼석·이개호

양부남 • 신영대 • 박용갑

임오경 · 조인철 · 이정문

어기구 • 위성곤 • 허 영

장종태 • 유후덕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·조사 및 발굴·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·운영함으로 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·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·협력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(이하 "진흥 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
 - 2.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 · 운영
 - 3.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, 구매 촉진 및 판로 개 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
 - 4. 재단이 조사・연구・수집한 자료의 취합, 정리 및 활용
 - 5.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
 - 6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- 7.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 제목 중 "권한의"를 "권한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"을 "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,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 정 안 제27조의2(국립역사문화권진홍원의 설립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 ·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(이하 "진홍원"이라한다)을 설립한다.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③ 진홍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 2. 재단 간연계망 및 협력체계구축·운영 3.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콘비츠의 홍보, 구매촉진 및판로 개최 등 유통활성화지원 원 4. 재단이 조사·연구·수집한자료의 취합,정리 및활용
	5.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

교육 및 양성

- 6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7.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직원을 둔다.
-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및 「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진흥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・수익하게할 수 있다.
- ①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.

제31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
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
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해당 지역의 <u>지방자치단</u>
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
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<신 설>

	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,	<u>구</u>
	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	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	31조(<u>권한 등의</u> 위임 또는	위
	탁) ①	
	기방	<u>자</u>
	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	
	,	
	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	도
	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	의
	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	는
	바에 따라 시행자, 재단 또	는
	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	